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

3. 발급기관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합치될 것

다. 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기재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복수 품목의 수출이 허용될 것

제 4.4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가.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나.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
다.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2. 발급기관은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수입자는 제3부본을 보유한다.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한다.

3.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은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변경은 해당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서명할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승인 및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긋고 지워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의 도난·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원본증명서 대신)“진정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 및 3부의 부본에 대한 진정등본을 발급기관

이 가지고 있는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제4부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제 4.5 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2.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그 만료일 이후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상품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 전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 가. 단일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복수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 4.6 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1.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제 4.7 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제 4.8 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 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면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 마. 수입자는 신고의 기초가 된 원산지증명서가 옳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그 상품의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제1항라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세관통제 서류의 사본

4.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수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5일 이상이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정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입자가 제1항마호에 따라 정정된 원산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4.16조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구 없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제 4.10 조 기록유지요건

1. 발급기관·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관련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무원 또는 발급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4.11 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문제의 상품이나 그 상품의 특정 부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¹⁾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발급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 무작위로 사후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하고 그 사유와 원산지증명서상에 주어진 특정사항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 나.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신속히 요청에 응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조치를 수반하여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신속히 전

1) 대한민국의 경우, 인도로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에 언급된 발급기관은 대한민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당국을 지칭한다.

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검증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12 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에 따른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및 서류 요구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및/또는
- 다.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2.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서면 요구서 또는 질문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정보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이 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임을 적시한다.

3.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작성된 질의서 또는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하고 검증 대상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의서를 회신하지 못하거나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완료 전 고려될 만한 서면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해당 상품에 대

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5. 제1항다호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음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2)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발급기관
- 3)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관세당국, 그리고
- 4) 검증방문 대상 상품의 수입자

나.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명칭
-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 3) 검증방문 예정일
- 4) 검증 대상인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 예정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획득한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검증방문 대상이 되었을,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기할 의사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동안 수행된다.

6. 제1항다호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방문과정에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할 수 있다.

7.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 발급기관에 그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된다.

8.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전달한다.

9. 검증방문이 수행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방문을 포함한 검증 방문 절차,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통보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발급기관에 전달된다.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4.11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10.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방문에 앞서 상품의 수입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면정보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는 근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13 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1.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재료의 검증은 제4.12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2.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세당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

가. 기록에 대한 접근거부

나. 검증 질문서에 대한 미회신, 또는

다. 제4.12조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라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방문에 대한 동의를 거부

3. 당사국은 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마호에 따른 검증방문의 연기 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지는 아니한다.

4.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의 규정상의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 4.14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1.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회수 할 수 있다.

-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제4.10조에 따른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그 당사국이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라. 제4.1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또는 신고를 제출하였음을 시사하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2. 제1항마호의 목적상, “행위유형”이란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적어도 2회 행한 경우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서면 결정서를 제4.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그 수

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회 송부한 것을 말한다.

제 4.15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제공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

2.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정보는,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의 결정 및 관세 사안의 운영과 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기된 모든 행정적·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을 미리 통보받는다.

제 4.16 조

별 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한 형사·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원산지증명서와 연관된 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발급 기관은 관련인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한다.

제 4.17 조

검 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시스템과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4.18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당사국 각자의 법·규정 또는 행정정책을 통하여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이 장의 해석·적용 및 운영에 관한 통일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이내에 통일규칙을 수정 또는 추가한다.